숙박약관

적용범위

제1조 당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호텔이 일본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2조 당호텔에 숙박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당호텔에 제시해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간

(3) 숙박요금(별표 제1에 따름.)

(4) 기타 당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본조 제 2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호텔은 그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이 있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계약은 당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되는것으로 합니다. 단, 당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성립한 숙박계약에 의한 숙박기간의 숙박요금등을 한도로 하여 당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등에 충당하며,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위약금에,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시에 반환됩니다.

4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것으로 합니다(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호텔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함).

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호텔은 계약 성립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당호텔은 다음 경우는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거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a 부터 c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

a 조폭단원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1991 년 법률 제 77 호).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조폭단 (이하 조폭단), 동법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조폭단원 (이하 조폭단원), 조폭단 준구성원 혹은 조폭단 관계자 그외 반사회 세력

b 조폭단 혹은 조폭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그외의 단체일 경우

c 법인의 임원이 조폭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자가 다른 숙박객에 심각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해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불리한 요구를 요구했을 때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당호텔에 요구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호텔은 숙박객의 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당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써,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 2 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단, 당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해 당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함).

3 당호텔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 시(사전에 도착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2 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당호텔은 당호텔에서 지정하는 숙박패키지등의 상품에 관한 숙박계약 및 특정일에 관한 숙박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본조 제 2 항의 규정과는 다른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당호텔은 당호텔에 지정하는 특정 단체의 숙박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별도의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호텔의 계약해제권

제7조 당호텔은 다음 경우에는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a 부터 c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

a 조폭단, 조폭단원, 조폭단 준구성원 혹은 조폭단 관계자, 그외 반사회 세력

b 조폭단 혹은 조폭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그외의 단체일 경우

c 법인의 임원이 조폭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 할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 심각한 폐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 라는게 명백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해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불리한 요구를 요구했을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숙박 할려는 자가 만취등의 이유로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객실 침대에서의 흡연, 소방용설비 등에 대한 훼손, 기타 당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당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3) 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간

(4) 기타 당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등록한 개인정보는 숙박업무 전반을 처리하기위해 사용하는것으로, 그 이외의 목적으로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우송, 팩스, e-메일 등에 의해 예약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2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 의사를 고지해야 합니다.

3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일본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숙박자에 대해 여권의 제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여권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합니다.

객실의 사용시간

제9조 숙박객이 당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 시부터 다음날 오전 11 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간외 객실 사용에 대해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규정의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은 객실 타입, 연장시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프론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１０조 숙박객은 당호텔내에서는 당호텔이 정하여 객실내에 비치한 호텔이용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１１조 당호텔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곳곳의 게시물,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１２조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현금 또는 당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출발시 또는 당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결제합니다.

3 당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당호텔의 책임과 면책

제１３조 당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호텔의 책임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당호텔은 만일의 화재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 당호텔은, 숙박객이 객실 또는 비즈니스센터에서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기기의 장애, 소프트 웨어의 장애, 통신장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시스템장애, 기술적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불가능, 또는 통신중단에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의 취급

제１４조 당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본항의「위약금상당액의 보상료」는 별표 제 2 의 「계약해제통지를 받은 날」을 「보상료지불통지를 한 날」로 간주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관계없이 당호텔이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당호텔의 책임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프런트, 벨캡틴데스크, 혹은 클록룸에 기탁한 물품 또는 프런트에 비치한 대여금고에 기탁한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를 안한 경우에는 당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호텔내에 반입해 프런트, 벨 캡틴 데스크, 혹은 클록룸에 기탁한 물품 또는 프런트에 비치한 대여금고에 기탁한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당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당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서 당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전에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호텔에 남아있는 경우, 당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을 한 후 법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 2 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고, 전항의 경우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여부에 관계없이 당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지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에 임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숙박객은 당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준거법

제19 조 본약관에 기준한 숙박계약의 해석 및 효력은 일본법에 준거합니다.

합의관할

제 20 조 숙박객과 당호텔에 본약관에 기준하는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련하는 계약에 관한 재판상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도쿄지방재판소를 제 1 심 전속적합의관할재판소(법원)로 하는것으로 합의합니다.

약관의 변경

제 21 조 당호텔은 당호텔의 재량으로 본약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호텔이 본약관을 변경할 경우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와 변경후의 약관 내용 및 효력발생일에 관해서 효력발생일 1 개월 전까지 호텔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3 변경후, 약관 효력발생일 이후에, 숙박객이 약관에 기준한 호텔 서비스를 이용했을 시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산정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 역
숙박요금등	숙박요금	① 객실료 (혹은 객실료+조식등의 식사료) ② 써비스료 (①×15%)
	세금	・소비세 ・숙박세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 / 계약신청객실수	불박	당일	전일	2일전	9일전	20일전	30일전
10실까지	100%	100%	80%	50%			
11~50실까지	100%	100%	80%	50%	20%	10%	
51실이상	100%	100%	80%	50%	30%	20%	10%

(주)

1. %는 별표제1에 정하는 객실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몫(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11실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 숙박 10일 전(숙박 10일전보다 나중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 숙박 예정 객실수의 10%(끝자리가 1~9일경우 0으로함)에 해당하는 객실수몫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4. 「계약해제 통지를 받을날」의 기준은 일본표준 시각으로 합니다.

호텔 이용규칙

게이오프라자호텔(이하 당호텔)에서는 손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숙박약관 제 10 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이용규칙(이하 본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숙박 또는 호텔내의 모든 시설이용을 사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객실 이용에 대하여

(1) 객실입구문뒤쪽에 게시되어 있는 피난경로도 및 각층 비상구를 확인해 주십시오.

(2) 재실중 및 특히 취침시에는 반드시 실내측 자물쇠와 도어체인을 잠궈 주십시오.

(3) 외부에서문을 노크했을 때는 도어체인을 잠근 채문을 열거나 도어스코프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람으로짐작되는 경우에는 게스트릴레이션스매니저(다이얼 7)에게로 연락해주십시오.

(4) 금연객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여있습니다. 금연객실에서의 흡연이 판명되었을 경우, 객실의 판매중지,숙박비용외에 침구, 커튼, 융단등의 세탁비용 그외 보수등에 걸린 실비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레베이터홀, 복도등 화재가 나기쉬운 장소 및 비상구, 피난 발코니등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여있습니다. 흡연객실에서의 침대위 흡연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니 삼가하여 주십시오.

(5) 객실내 및 복도에서는 호텔의 허가없이 난방용,취사용 등의 화기, 촛불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객실내에서의 조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취사용 설비가 있는 객실은 제외) .

(6) 램프 쉐이드에 의류를 걸거나 세탁물 등을 말라놓지 마십시오.

(7) 호텔의 허가없이 객실을 영업행위(전시회・사무실・기타) 및 파티 등 숙박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8) 호텔의 허가없이 객실내의 비품을 이동시키거나 또는 객실내를 공사하거나 혹은 개조하지마십시오.

(9) 관내외의 제반설비,제반비품의 손상, 분실에 대해서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10)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창가에 놓지 마십시오.

(11) 야간 방문자와의 객실내에서의 면회는 삼가해 주십시오.

(12) 장기숙박이용으로 거주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13) 숙박등록자 이외의 숙박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14)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사절합니다.

2. 객실 카드키에 대하여

(1) 재실중 외출하실 때는 카드키를 반드시 소지하고 문쇠를 잠궜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2) 호텔내의 레스토랑, 바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객실카드키 또는 숙박카드(키북)를 제시해 주십시오.

(3) 객실카드키는 호텔출발시에 반드시 프런트에 반납해주십시오.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반납이 없는 경우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3. 요금결제 등에 대하여

(1) 도착시에 신용카드를 확인하거나 예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요금결제는 출발시에 프런트에서 부탁합니다. 그리고체재중이라도 요금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호텔이 청구해도 결제가 없는 경우에는 객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수표, 어음에 의한 결제는 사절합니다.

(4) 숙박자 이외의 분이 요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까지 결제가 없으면 숙박자 본인에게 직접 요금결제를 청구합니다.

(5) 객실내의 전화회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통신요금 유무에 관계없이 시설이용료가 가산되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또한 공중전화는 로비에 있습니다.

(6) 이용대금에 관해서는 법정의 세금 외, 15%의 봉사료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팁등은 사양합니다.

4. 귀중품, 보관품에 대하여

(1) 체재중의 현금, 귀중품보관에 관해서는 프런트에 비치된 대여금고(무료)를 이용해 주십시오.

프런트에 비치된 대여금고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일 분실 도난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호텔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프런트에 비치된 대여금고 이용은 숙박기간내에 한정됩니다. 이용하신 상태로 무단으로 출발한 경우에는 열쇠교체비용 부담 및 보관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고내 물품의 분실 등에 대해서는 당호텔에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3) 체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벨캡틴데스크, 안내카운터 및 휴대품 보관소에서는 현금, 귀중품, 부패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을 보관해 드리지 못합니다. 만일 상기 장소에서 현금, 귀중품, 부패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혹은 변질이 발생한 경우는 당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당호텔이 손님으로부터 보관을 맡은 물품의 반환에 대해서는 인환증을 소지한 분에게만 반환해 드립니다.

인환증을 분실,도난 등 원인 여하에 관계없 잃어버린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환한 후의 물품의 분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분실물 처리는 일본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5. 주차장이용에 대하여

(1) 주차장구내에서는 직원의 유도 및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2) 주차중인 차량내에 현금, 귀중품 및 기타 물품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주차중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3) 호텔직원이 지정한 주차공간 이외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견인차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견인에 소요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4)호텔 직원에 의한 차량 대행이동(주차 및 출차서비스)은사절합니다.
(5) 장기(1 개월 이상)에 걸친 주차를 희망하는 경우는 미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없는 경우, 일본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반사회적세력등,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당호텔시설의 이용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이용을 사절하고 당호텔에서 퇴거시킵니다. 또한 예약후 혹은 이용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사절합니다.
(1) 조폭단원, 조폭단 관련단체 또는 관련자, 기타 반 사회적세력 등이라고 밝혀진 경우.
(2)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단요구 또는 이것과 비슷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3) 과거 당호텔에서 이용거부통지를 받은 자.
(4) 도박과 풍기문란한 행위 혹은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
(5) 심신쇠약, 약물 음주등으로 인한 자기상실등 자신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다른 손님의 위험 공포감 불안감을 조성할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6) 호텔 관내 혹은 객실내의 큰소리 및 고성방가등의 행위로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폐를 끼쳤을 경우
(7) 상기 각호와 비슷한 행위가 있는 경우

7. 호텔내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아래 물품의 반입, 또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1) 동물, 새, 기타 애완동물류.(신체장애자 보조견은 제외)
(2) 화약, 휘발유, 기타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3) 악취가 나는 물품.
(4) 법에 따라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5) 객실내에 비치한 유카타, 목욕가운, 슬리퍼 등을 착용하고 객실밖으로 나가는 행위.
(6) 광고, 선전물의 배포, 물품 판매, 권유 등.
(7) 호텔의 허가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는 행위.
(8) 휴대전화 이용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통화 및 큰소리로 통화하는 등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 폐를 끼치는 행위.
(9) 관내의 지정흡연실 이외에서의 흡연.
(10) 로비등공적공간에서의 음식물 섭취.

8. 이용 규칙의 변경등
(1)당호텔은 당호텔의 재량으로 본약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호텔이 본약관을 변경할 경우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와 변경후의 약관 및 효력발새일에 관해서는 효력발생일 1 개월 전까지 호텔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3) 변경후, 약관 효력 발생일 이후에, 숙박객이 약관에 기준한 호텔 서비스를 이용 했을시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규칙의 해석 및 효력은, 일본법에 준거합니다.